

『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존속기한)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「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기금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가. 당초 : 「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

나. 변경 : 「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○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(안 제4조)

가.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,
- 위원회 비율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